



초과강의료 및 강사료 지급규정

제정일	1978. 6. 1
개정일	2024. 3.15
개정차수	25차
담당부서	학사운영과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 및 강사의 제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강의의 구분과 정의) 본교의 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한 목적으로 내·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강의하는 것을 특별강의라 한다. (개정 2011. 5. 1)
2. 책임시간 이외의 수업을 초과강의라 한다.
3. 전임 이외의 교원이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을 시간강의라 한다.

제 3조 (강사료 지급) 초과강의와 시간강의에 대하여는 각 호 1에 의하여 각각 강사료를 지급한다.

1. 초과강의료는 초과강의 한 교원에게 실제 시간 수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 3. 1)
2. 강사료는 시간강의를 담당한 자에게 실제로 강의한 시간 수에 의하여 지급한다. 단,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교가 임시휴업하였을 때에는 그 휴업기간 중 강사가 담당할 시간은 강의를 한 것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1)
3. 집중이수제, 팀티칭 수업 중 순차강의 등의 초과강의료 및 강사료는 일괄 지급하지 않으며, 강의기간과 관계없이 15주 수업을 기준으로 주차별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 3. 1)

제 4조 (강사료 계산) ① 강사료는 주 단위로 시간을 계산한다.

② 학기 중 발령에 따른 초과강의료는 발령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신설 2022. 7. 1)

제 5조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료 계산)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료 계산은 개강 후 수업일수 1/4선을 기준으로 수강인원을 파악하여 각 호 1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22.10. 1)

1. 수강인원 60명 미만 : 1.0시간 (개정 2011. 8. 1)
2. 수강인원 60명 이상 80명 미만 : 1.5시간 (개정 2011. 8. 1)
3. 수강인원 80명 이상 : 2.0시간 (개정 2011. 8. 1)
4. 원격수업의 강사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신설 2021. 3. 1)
 - 가. 수강인원 65명 미만 : 1.0시간
 - 나. 수강인원 65명 이상 100명 미만 : 1.5시간
 - 다. 수강인원 100명 이상 140명 미만 : 2.0시간
 - 라. 수강인원 140명 이상 : 2.5시간

[제목개정 2022.10. 1]

제 6조 (책임시간) ①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단, 보직교원의 겸직 등으로 구분이 상이한 경우 낮은 책임시간을 적용한다. (개정 2022. 3. 1)

② (삭제 2022.10. 1)

[제목개정 2022.10. 1]

제 7조 (강의시간 제한) 강의시간은 각 호 1에 의한 시간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시간 편성상 부득이 하여 담당시간을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2.13)

1. 전임교원 강의(주당) 18시간. 단, 강의전담교원은 20시간 (개정 2015. 2. 1, 2020. 8.10)
2. 강사 강의(주당) 6시간 (개정 2014. 1. 1, 2019. 8. 1)
3. 겸임교원(주당) 9시간
4. 초빙교원(주당) 9시간
5. 명예교수(주당) 6시간 (신설 2020. 1. 1)
6. 특임교수(주당) 6시간 (신설 2020. 1. 1)

제 8조 (강사료 지급의 특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 교원에
게도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국경일 및 개교기념일
2. 시험기간(수시, 기말고사)
3. 기타 교내 또는 국가적 행사로 인하여 휴강할 때

제 9조 (강사료 지급일) 강사료는 특별강사료를 제외하고는 당월분을 익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
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제10조 (강사료 지급 기준액) 강사료의 지급 기준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2.13)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7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임용 중인 시간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간강사로 이미 임용된 자는 그 임용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별표1]의 적용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3. 2. 1, 2014.11. 1, 2016. 9. 1, 2019. 1. 1, 2020. 3. 1, 2020. 8.10, 2022. 3. 1, 2022. 7. 1, 2022.10. 1, 2024. 3.15)

전임교원 책임시간

연 번	구 분	책 임 시 간
1	부총장	0
2	대학본부 처장 산학협력단장 혁신지원단장 LINC3.0사업단장	4
3	시설사업단장 혁신지원단 부단장 SDS HIVE센터장 창업지원단장 신산업특화사업단장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장 평생교육원장 정보지원센터장	6
4	부속기관장 부설기관장 센터장 단, 위 보직자 중 3번 해당 보직자 제외	8
5	학과장	9
6	책임교수	10
7	정년퇴직 직전학기 교원	6
8	산학협력중점교원	8
9	일반전임교원	12
10	차년도 신설 학과에 신규 임용 교원	총장 승인에 따라 일부 면제
11	임시임무를 부여받은 교원	

※ 단, 외부재정지원사업의 보직자는 사업이 선정 통보된 날의 다음 주차부터 위의 책임시간을 적용